

(부의안건 요약서-참조3)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	2003년도 시정업무 청취결의안	□ 제안이유 2003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내실있는 시정의 감시와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제10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 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발의 함 □ 주요골자 ○ 기 간 : 2003. 2. 12 ~ 2. 17 (5일간) - 일요일은 제외 ○ 장 소 : 각 상임위원회실 ○ 인사(간부소개) 및 총괄설명 • 본 청 : 국 장 • 사 업 소 : 사업소장(4급) • 구 청 : 구 청 장 ○ 업무계획 세부설명 • 본 청 : 담당관, 과장 • 구 청 : 과장 • 사업소 : 사업소장 (과장)	의회사무국	본회의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2	성남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안	☐ 제안이유 분당구 정자1동·이매1동·야탑3동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신설 ☐ 주요골자 · 분당구 정자1동·이매1동·야탑2동·야탑3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안 제4조 별표) - 정자1동은 35개통 196개반을 3개통 19개반이 증가한 38개통 215개반으로 - 이매1동은 27개통 187개반을 1개통 6개반이 증가한 28개통 193개반으로 - 야탑2동은 23개통 145개반을 3개반이 증가한 23개통 148개반으로 - 야탑3동은 41개통 248개반을 1개통 7개반이 증가한 42개통 255개반으로	총 무 과	자치행정
3	성남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 안	☐ 제안이유 · 조세감면 대상자간 조세감면의 형평성 제고, 불명확한 자구의 정리로 규정 취지의 명확성을 기하고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함. ☐ 주요골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였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이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	세 정 과	경제환경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의 문구가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의 다른 조항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적용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제2항, 안 제15조) ·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가공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단행법으로 각각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제1항)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 법안이 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함(안 제16조)		
4	성남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상 수수료 징수항목(164개) 중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거나 존치가 불필요한 항목과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이 신설된 항목은 폐지하고, · 수수료별 행정 서비스 제공원가에 미달되는 항목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	세 정 과	경제환경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주요골자 · 제3조(요율)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 120개 항목 중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거나 증명발급이 불필요한 67개 항목과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이 신설된 2개 항목을 삭제하고, 제3조2(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의 별표2, 44개 항목은 별도로 징수 규정이 정하여져 있어 전면 삭제함(안 별표1, 2) · 수수료 원가산출에 대한 용역결과 제공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고 사무지침과 근거법령에 따라 16개 항목을 신설하여 총 67개 항목으로 요율표를 정리함(안 별표1)		
5	성남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의 이첩시달이 있어 ·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회 계 과	경제환경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6	성남시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제1차변경계 획안	□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5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 인하(안 제22조제1항)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현재 연8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인하(안 제22조제2항, 제3항) □ 제안이유 · 일반주거지역내 연립주택 용지를 매각하여 효율성이 높은 공공·공공용부지로 대체조성하여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처분(매각) · 토지 : 1필지 5,062.2㎡ 5,910,118천원 - 연립주택용지(야탑동 221) 1필지 5,062.2㎡ 5,910,118천원	회 계 과	경제환경
7	성남시장사시설의 설치및운영조례 안	□ 제안이유 · 2001. 1. 13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가 2002. 8. 19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과 도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현행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로 통합 제정·운영하고자 함.	위 생 과	사회복지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주요골자 · 현행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원화하여 운영함 (안 제1조) ·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 · 추모의집 사용자의 자격을 성남시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유골을 안치하려는 자와 다른 허가된 안치시설에 있는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중 연고자가 신청일 현재 6월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무연고 행여사망자로 확대함. (안 제7조제1항) · 화장장·추모의집·유택동산의 사용자중 성남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사용료를 타지역 장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함(최저 25%, 최고 60.7%)(안 제8조제1항 별표2) · 장사시설의 사용료의 면제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한 적용대상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군 복무중 사망한 자로 확대하고 유택동산 이용대상에 사산아를 신설하여 유골의 무단투기를 예방함 (안 제9조제1항) · 납골시설 설치장소는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완화함 (안 제13조)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8	성남시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나치게 완화된 건축법을 적용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등) 건축으로 인한 고밀화 및 주차난이 날로 심각하여지는 등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다른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따라서, 쾌적한 주거기능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차장법적용의특례 규정 삭제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조) · 적용 건폐율을 70퍼센트이하에서 60퍼센트이하로 하향조정(안 제11조) · 적용 용적율은 320퍼센트이하에서 250퍼센트이하로 하향조정(안 제13조) ·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의 주차장법적용 특례규정 삭제(관련조항삭제)(안 제18조) · 이 조례 시행 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구지정 입안된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종전 규정에 의함(안 부칙2항)	건 축 과	도시건설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9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제안이유 · 국민임대주택단지내 20호이상 취락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취지와 인근지역의 우선해제 취락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해제를 추진함으로써 타 우선해제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table border="1">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위 치</th> <th rowspan="2">구역</th> <th colspan="3">면 적(m²)</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경</th> <th>변경후</th> </tr> <tr> <td>변 경</td> <td>성남시 외곽 일원</td> <td>개발 제한 구역</td> <td>54,600,000</td> <td>감) 43,000</td> <td>54,557,000</td> <td></td> </tr> </table> ※ 금회해제지역- 도촌동(섬말, 웅담말)	구 분	위 치	구역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성남시 외곽 일원	개발 제한 구역	54,600,000	감) 43,000	54,557,000		도 시 과	도시건설
구 분	위 치	구역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성남시 외곽 일원	개발 제한 구역	54,600,000	감) 43,000	54,557,000																